

※제 호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서 ※표시란은 적지 않습니다.			
신청인	상호(명칭)		
	성명(대표자)		주민등록번호
	주소	(전화번호: )	
등록신청업종		<input type="checkbox"/> 자동차매매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자동차해체재활용업	
		<input type="checkbox"/> 자동차정비업(종합·소형·전문·원동기)	
사업장 개요	명칭		
	소재지	(전화번호: )	
	영업소명칭·위치		
「자동차관리법」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 와 같이 신청합니다.  년 월 일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
구비 서류	신청인(대표자) 제출서류		시장·군수·구청장 확인사항
	1. 사업장(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는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포함합니다)의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2. 시설일람표 및 그 예정배치도(임대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하며,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 3. 사업계획서(소요자금 및 종사원확보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) 1부 주.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하여 적어야 합니다.	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토지이용계획정보

신청안내

신청하는 곳	시·군·구	처리기간	15일
수수료	20,000원		